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

(대표발의: 한 선 미 의원)

의안 번호	23-104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3. . .

발의자: 한선미, 강동오, 고병준, 권영숙,
김승수, 백남환, 오옥자, 이한동,
장정희, 차해영, 홍지광

1. 제정이유

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워 가야하는 시기에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부여된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가족돌봄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나.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(안 제5조)
- 다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전문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가.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

나. 청년기본법 제21조

나.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추후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11. 16.~ 11. 21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족돌봄청년”이란 고령, 장애,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, 간병 및 돌봄 지원, 교육지원,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부터 제39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

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
2.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
3.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
4.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4년마다 관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시 전문기관, 단체,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
2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·정서 지원사업
3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
4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사업
5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
6.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7.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,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8조(민간전문가 활용)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·법인·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중복지원의 제한)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청소년복지 지원법 (약칭: 청소년복지법)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31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(이하 “특별 지원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, 학업지원, 의료지원, 직업훈련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 다만,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청년기본법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33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제21조(청년 복지증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(약칭: 사회서비스이용권법)

[시행 2022. 1. 1.] [법률 제18216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,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